

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백선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97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12.

발 의 자 : 백선희 · 강경숙 · 이해민
황명선 · 정준호 · 서왕진
손명수 · 박희승 · 정춘생
황운하 · 최혁진 · 이수진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회서비스의 분야를 복지, 보건의료, 교육, 고용, 주거, 문화, 환경 등으로 규정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음.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의 빈곤·질병·무위·고독 등의 위험이 소수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바, 이 같은 위험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 방안을 준비함으로써 국민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.

이에 ‘노후준비’를 사회서비스의 한 분야로 명시하여 초고령사회에서의 노후준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 분야가 사회보장의 한 영역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4호).

법률 제 호

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호 중 “환경”을 “환경, 노후준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3조(정의) ----- ----- 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“사회서비스”란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, 보건의료, 교육, 고용, 주거, 문화, <u>환경</u>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, 재활, 돌봄, 정보의 제공, 관련 시설의 이용, 역량 개발,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.	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환경, 노후준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5.·6. (생략)	5.·6. (현행과 같음)